

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혁신



서상덕 >>

소방방재청 재해복구지원팀 기술서기관

1. 추진배경

-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정부의 무상지원은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이 매우 낮았던 60년대초부터 사회구호차원에서 영세 이재민들이 손상된 생활기반시설을 조속히 복구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으나
- 그동안 사회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가 복잡 다기화되면서 대규모 재해발생시 마다 주민들의 요구, 특정단체의 집단 압력 등으로 관련 규정이 수시 개정, 지원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으며
- 또한 선지원 등에 따라 재난 복구비 지원의 성격이 모호한 가운데 점차 보상적 성격으로 변질되면서 부문간·항목간·농어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
⇒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항목과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의 인상요구와 상가 등 비농어업부문까지 지원해야한다는 주장이 커지는 등 국가에 대한 보상기대 심리가 심화되고 있음
- 따라서 현단계에서 재해복구비 지원성격을 명확히하고 지원수준도 한정하므로써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, 향후 보험제도도

<추진경위>

-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혁신을 위한 연구용역 : '04. 1 ~ '05. 3
- 행자부, BH, 국무조정실, 국회 등 관련기관 설명 : '05. 5. ~ 9월
- 혁신관련 시행령개정(안) 관계부처 의견조회 : '05. 6. 3~ 6. 13
- 법령개정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심의·공포 : '05. 8. 16~ 11. 30



입에 대비한 효율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함에 따라 업무혁신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혁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

60%로 농·어업간 지원수준이 달라 차등 지원에 따른 농가 불만 표출

II. 현실태 및 문제점

■ 자연재해 지원제도의 기본질서 붕괴

- 사유재산 피해지원의 기본 취지는 주택과 농·어업 등 생계터전을 잃은 영세 이재민에 대한 사회 구호적 차원의 구호비와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토록하고 있으나
- 시장개방(FTA) 등으로 인하여 농어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정치·사회적 흐름에 따라 보상적 성격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수준이 높아지면서 기본정신 퇴색 및 상가 등 지원요구 확대에 대한 대응논리 상실

■ 피해허위·과다신고 등 도덕적 해이현상 심화

- 수산생물 등은 피해확인이 곤란함을 악용, 부풀려 신고후 복구비를 횡령하는 등 도덕 불감증 만연, 특히 지방의원·수협간부 등 사회지도층이 개입,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지원액의 상·하한선 설정 등 근원적 차단대책 마련 절실

■ 농·어업 경영규모 및 산업간 국고 차등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 민원야기

- 최근 농·어업정책이 상업농·전업농 경영체제로 가고 있으나 피해지원 방침은 규모 확대를 지양하고 있어 형평성에 따른 불만 표출 및 대·중·소 규모제한 철폐요구 증가
- '04.3.5폭설시 충청지역 축산농가 집단상경 BH, 국회 행사부, 농림부 방문 집단 항의, 국무총리 현장시찰시 현행 지원기준 까지만 피해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
- 복구비 보조율이 가축은 50%, 수산생물은

■ 복구비 지원체계 복잡·다기화로 지원의 신속성 저하

- 구호비, 학자금 보전, 위로금, 시설복구비 등 지원 항목별로 업무 담당부서가 중앙에서부터 일선 시군구에 이르기까지 분산되어 상호점검(cross checking)을 하지 못함으로 중복지원 및 손실액을 초과한 과다지원과 지연지급 등 문제 노정
- 복구비 지원의 형평성·효율성·단순화·합리성 추구
- 자연재해보험제도 도입의 기틀 마련

III. 혁신방향

- 복구비 지원의 형평성·효율성·단순화·합리성 추구
- 자연재해보험제도 도입의 기틀 마련



- ① 사유재산피해 지원 성격의 명확화
- ② 열거식 지원에서 통합·등급화 일괄 지원
- ③ 지원수준의 상·하한선 설정, 도덕적 해이 방지
- ④ 복구비 지원관련 용어의 통일
- ⑤ 농·어업 등 부문간 국고 보조비율 동일화
- ⑥ 지원 대상의 규모제한 철폐 민원 해소
- ⑦ 손실액 불초과 지원원칙 정립
- ⑧ 지원부서일원화OneStop처리로중복지원배제

IV. 세부 혁신내용

□ 사유재산피해 지원 정책방향 재정립

- 사유재산은 소유자가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규정

- 다만, 생계와 직결되는 주택과 산업의 특성상 자연재해에 노출된 소형어선, 농작물, 수산증양식 등에 대해서는 복구비의 일부를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지원
 - 공공적 사유시설인 사유림 등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지원 복구
- ⇒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나, 국민 스스로도 자율방재의식을 고취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보상적 성격의 지원을 지양

단기적으로는 재해구호+복구비 일부 지원
⇒ 미래 재해구호 + 재해보험

[2] 개인별 총 피해사항을 통합·등급화 일괄 지원

- 구호비, 생계지원, 주택, 농작물 등 지원항목별로 재난지수를 산정, 합산하여 등급화 지원 (별첨 1 참조)
- 재난등급 산정방법
 - ① 현행 지원항목별 복구비 지원단가에 보조율(국고+지방비)을 곱한 금액을 기본값으로 하고 기본지수로 환산(1,000원 단위를 지수 1로 환산) 조건표 작성
 - ② 항목별 기본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시설

별 재난지수를 우선산정 하고 이재민 등 간접지원 지수를 합산, 최종 재난등급 결정
※ 주택1동 전파, 축사 200m2 파손시 계산 예시

[3] 지원수준의 상·하한선 설정으로 근원적 허위·과다신고 차단

- 1개 농어가에서 재해복구비를 1억원이상 지원 받는 것은 재해구호비가 아닌 보상금으로써 본연의 취지와 맞지 않고 가축·수산생물 등 지원항목간 형평성 문제가 클 뿐 아니라
 - 피해를 많이 신고하면 지원금을 많이 받는다는 심리가 팽배해 허위·과다신고하는 등 비리발생의 근원적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상한선을 설정·운영, 근원적 국고부담 해소 및 국고낭비 방지
- ※ 일본의 경우 현마다 차이는 있으나 주택의 경우 최고 400만엔 지원
 - 세대전체의 수입합계가 500만엔 이하 400만엔 지원
 - 세대전체의 수입합계가 500~700이하이며 세대주가 만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세대 또는 원호대상세대 200만엔
- 통영 등 표본지역의 실제 지원실적을 분석한

<표본지역 재해복구비 지원규모별 농어가 분포현황>

(단위 : 억원)

구 분	농어가수	비 율	지 원 금	비 율
합 계	17,669	100	1,043	100
200만원 이하 지원	13,976	79.1	104	10.0
201만원~5,000만원 이하 지원	3,257	18.4	337	32.3
5,000만원~1억원 이하 지원	233	1.4	164	15.7
1억원 이상 지원	203	1.1	438	42.0

<지역별 재해지원액 최고 및 최저>

(단위 : 원)

구 분	삼척	논산	나주	통영	
복구비 지원액	최 고	112,392,000	135,745,940	676,410,000	817,841,000
	최 저	820	112,580	340	27,102
	평 균	810,106	16,773,475	1,515,152	21,635,566

※ 삼척('03 태풍 매미), 논산('04 폭설), 나주('04 태풍 메기), 통영('03 태풍 매미)

결과(별첨 2참조)

- 전체의 79.1%가 200만원이하 97.5%가 5,000만원이하를 지원받는 반면
- 5,000만원을 넘는 가구는 2.5%에 불과하나 지원금은 전체의 57.7%를 차지하고 있으며
- 1억원을 넘는 가구도 1.1%에 불과하나 지원금은 전체의 42%를 차지하는 등
- 복구비 지원대상이 영세 농·어가가 아닌 기업성 농·어가에 편중되고 있으므로
 - ⇒ 가구당 최고 5천만원으로 하되 지원액 축소에 따른 민원을 감안, 2006년도는 3억원, 2007년부터는 2억원, 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10년 부터는 5천만원으로 설정·운영
- 재해지원대상의 하한선 설정
 - 경미한 피해는 재해지원 효과는 미미하나 피해조사, 복구비 지원 등 행정 절차상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
 -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현장 확인, 피해조사동행, 행정기관 방문 등을 감안할 때 실익이 없음
 - ⇒ 가구당 30만원 미만피해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조치
 - 지자체에서 현물 지원 등으로 대체

④ 복구비 지원관련용어 재난지원금으로 통칭

- 위로금, 이재민 구호비, 생계지원, 학자금보전, 세입자보조금, 입식비, 대파대, 농약대, 시설복구비 등 10여개의 지원명칭을 “재난지원금”으로 통칭
- 현행 보상금, 보조금 등의 예산비목도 “재난지원금”으로 비목을 신설 단일화,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

⑤ 지원대상 기준을 대·중·소규모 구분없이 지원 형평성 해소

- 우사 및 돈사 1,800m², 계사 2,700m², 농경지 3ha 등 각 시설별·경작규모별로 지원대상

을 제한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행정소송 및 집단 고질민원이 야기되고

- 실제 영농규모가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피해면적을 지원기준 이하로 허위신고하는 등 현행 기준을 악의적으로 이용 복구비를 횡령하고 있으므로
 - ⇒ 지원대상 기준을 폐지, 대·중·소 경영규모에 관계 없이 지원

⑥ 농경지, 어선, 가축, 수산생물 등 농·어업간 보조비율 동일화

- 농림분야보다 수산분야 보조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한 지원규모도 더 크므로 공평하게 재조정
 - 농림시설 35%, 가축 50%
 - 수산증양식시설 50%, 수산생물 60%
 - ⇒ 농림 및 수산시설 : 35%, 가축 및 수산생물 50%로 동일 지원

⑦ 손실액 불초과 지원원칙 정립

- 총 복구비가 실제 손실액을 초과 지급, 도덕적 해이 유발 및 주민간 위화감 초래
- 특히 특별재난지역선포시 특별위로금 등 총 지원금이 농작물 피해액 보다 몇배 높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
 - 농작물(벼) 600평 침수시 실손실액은 쌀 13가마로써 금액으로 환산시 200만원이나 특별위로금 등 800여만원 지급
 - ⇒ 지원금이 실제 손실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

⑧ 지원부서 일원화 One Stop 처리로 중복지원 배제

- 현재 중앙 7개부처 12개부서, 시도 10개부서, 시군구 8개부서로 각각 분산되어 중복 지원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행정능률 측면에서도

비효율적이므로 지원업무 시스템을 소방방재청 재해복구지원팀에서 복구비를 통합 시도(1개과), 시군구(1개과)를 통해 One Stop 지원(별첨 3 참조)

- 시군구에서는 피해신고 접수·확인후 우선 자체예산으로 복구계획 수립전 긴급 지원토록 법적 장치 마련, 지연지급에 따른 민원 해소(업무 전산시스템 구축)

V. 결론

- 사유재산피해 지원 제도가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혁신되어 금년 1.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년부터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정부의 행·재정적 측면에서 여러가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한 몇가지만 나열해 보면
①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었던 대규모 경영

농어가들의 고통경감

- ② 재난등급화에 따른 개인별 지원금 투명화 및 신속 지원
- ③ 피해 허위·과다 신고 차단 등 도덕적 해이 현상 방지
- ④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
- ⑤ 국가재난 지원제도 정책의 재정립 및 질서 확립 등이다
- 앞으로 사유재산 피해 지원 제도 혁신사항이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농어가를 대상으로 피해신고방법, 재난등급화에 따른 지원절차 등 새로이 도입된 내용에 대하여 지상교육, 방송매체, 리후렛 제작 배포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는 한편,
- 업무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일선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기전까지 도상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< 별첨 1 >

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조건표

재난 등급	재난지수	재난지원금	재난 등급	재난지수	재난지원금	재난 등급	재난지수	재난지원금
1	299,001 이상	300,000,000	38	262,001~263,000	263,000,000	75	225,001~226,000	226,000,000
2	298,001~299,000	299,000,000	39	261,001~262,000	262,000,000	76	224,001~225,000	225,000,000
3	297,001~298,000	298,000,000	40	260,001~261,000	261,000,000	77	223,001~224,000	224,000,000
4	296,001~297,000	297,000,000	41	259,001~260,000	260,000,000	78	222,001~223,000	223,000,000
5	295,001~296,000	296,000,000	42	258,001~259,000	259,000,000	79	221,001~222,000	222,000,000
6	294,001~295,000	295,000,000	43	257,001~258,000	258,000,000	80	220,001~221,000	221,000,000
7	293,001~294,000	294,000,000	44	256,001~257,000	257,000,000	81	219,001~220,000	220,000,000
8	292,001~293,000	293,000,000	45	255,001~256,000	256,000,000	82	218,001~219,000	219,000,000
9	291,001~292,000	292,000,000	46	254,001~255,000	255,000,000	83	217,001~218,000	218,000,000
10	290,001~291,000	291,000,000	47	253,001~254,000	254,000,000	84	216,001~217,000	217,000,000
11	289,001~290,000	290,000,000	48	252,001~253,000	253,000,000	85	215,001~216,000	216,000,000
12	288,001~289,000	289,000,000	49	251,001~252,000	252,000,000	86	214,001~215,000	215,000,000
13	287,001~288,000	288,000,000	50	250,001~251,000	251,000,000	87	213,001~214,000	214,000,000
14	286,001~287,000	287,000,000	51	249,001~250,000	250,000,000	88	212,001~213,000	213,000,000
15	285,001~286,000	286,000,000	52	248,001~249,000	249,000,000	89	211,001~212,000	212,000,000
16	284,001~285,000	285,000,000	53	247,001~248,000	248,000,000	90	210,001~211,000	211,000,000
17	283,001~284,000	284,000,000	54	246,001~247,000	247,000,000	91	209,001~210,000	210,000,000
18	282,001~283,000	283,000,000	55	245,001~246,000	246,000,000	92	208,001~209,000	209,000,000
19	281,001~282,000	282,000,000	56	244,001~245,000	245,000,000	93	207,001~208,000	208,000,000
20	280,001~281,000	281,000,000	57	243,001~244,000	244,000,000	94	206,001~207,000	207,000,000
21	279,001~280,000	280,000,000	58	242,001~243,000	243,000,000	95	205,001~206,000	206,000,000
22	278,001~279,000	279,000,000	59	241,001~242,000	242,000,000	96	204,001~205,000	205,000,000
23	277,001~278,000	278,000,000	60	240,001~241,000	241,000,000	97	203,001~204,000	204,000,000
24	276,001~277,000	277,000,000	61	239,001~240,000	240,000,000	98	202,001~203,000	203,000,000
25	275,001~276,000	276,000,000	62	238,001~239,000	239,000,000	99	201,001~202,000	202,000,000
26	274,001~275,000	275,000,000	63	237,001~238,000	238,000,000	100	200,001~201,000	201,000,000
27	273,001~274,000	274,000,000	64	236,001~237,000	237,000,000	101	199,001~200,000	200,000,000
28	272,001~273,000	273,000,000	65	235,001~236,000	236,000,000	102	198,001~199,000	199,000,000
29	271,001~272,000	272,000,000	66	234,001~235,000	235,000,000	103	197,001~198,000	198,000,000
30	270,001~271,000	271,000,000	67	233,001~234,000	234,000,000	104	196,001~197,000	197,000,000
31	269,001~270,000	270,000,000	68	232,001~233,000	233,000,000	105	195,001~196,000	196,000,000
32	268,001~269,000	269,000,000	69	231,001~232,000	232,000,000	106	194,001~195,000	195,000,000
33	267,001~268,000	268,000,000	70	230,001~231,000	231,000,000	107	193,001~194,000	194,000,000
34	266,001~267,000	267,000,000	71	229,001~230,000	230,000,000	108	192,001~193,000	193,000,000
35	265,001~266,000	266,000,000	72	228,001~229,000	229,000,000	109	191,001~192,000	192,000,000
36	264,001~265,000	265,000,000	73	227,001~228,000	228,000,000	110	190,001~191,000	191,000,000
37	263,001~264,000	264,000,000	74	226,001~227,000	227,000,000	111	189,001~190,000	190,000,000

재난 등급	재난지수	재난지원금	재난 등급	재난지수	재난지원금	재난 등급	재난지수	재난지원금
112	188,001~189,000	189,000,000	152	148,001~149,000	149,000,000	192	108,001~109,000	109,000,000
113	187,001~188,000	188,000,000	153	147,001~148,000	148,000,000	193	107,001~108,000	108,000,000
114	186,001~187,000	187,000,000	154	146,001~147,000	147,000,000	194	106,001~107,000	107,000,000
115	185,001~186,000	186,000,000	155	145,001~146,000	146,000,000	195	105,001~106,000	106,000,000
116	184,001~185,000	185,000,000	156	144,001~145,000	145,000,000	196	104,001~105,000	105,000,000
117	183,001~184,000	184,000,000	157	143,001~144,000	144,000,000	197	103,001~104,000	104,000,000
118	182,001~183,000	183,000,000	158	142,001~143,000	143,000,000	198	102,001~103,000	103,000,000
119	181,001~182,000	182,000,000	159	141,001~142,000	142,000,000	199	101,001~102,000	102,000,000
120	180,001~181,000	181,000,000	160	140,001~141,000	141,000,000	200	100,001~101,000	101,000,000
121	179,001~180,000	180,000,000	161	139,001~140,000	140,000,000	201	99,001~100,000	100,000,000
122	178,001~179,000	179,000,000	162	138,001~139,000	139,000,000	202	98,001~99,000	99,000,000
123	177,001~178,000	178,000,000	163	137,001~138,000	138,000,000	203	97,001~98,000	98,000,000
124	176,001~177,000	177,000,000	164	136,001~137,000	137,000,000	204	96,001~97,000	97,000,000
125	175,001~176,000	176,000,000	165	135,001~136,000	136,000,000	205	95,001~96,000	96,000,000
126	174,001~175,000	175,000,000	166	134,001~135,000	135,000,000	206	94,001~95,000	95,000,000
127	173,001~174,000	174,000,000	167	133,001~134,000	134,000,000	207	93,001~94,000	94,000,000
128	172,001~173,000	173,000,000	168	132,001~133,000	133,000,000	208	92,001~93,000	93,000,000
129	171,001~172,000	172,000,000	169	131,001~132,000	132,000,000	209	91,001~92,000	92,000,000
130	170,001~171,000	171,000,000	170	130,001~131,000	131,000,000	210	90,001~91,000	91,000,000
131	169,001~170,000	170,000,000	171	129,001~130,000	130,000,000	211	89,001~90,000	90,000,000
132	168,001~169,000	169,000,000	172	128,001~129,000	129,000,000	212	88,001~89,000	89,000,000
133	167,001~168,000	168,000,000	173	127,001~128,000	128,000,000	213	87,001~88,000	88,000,000
134	166,001~167,000	167,000,000	174	126,001~127,000	127,000,000	214	86,001~87,000	87,000,000
135	165,001~166,000	166,000,000	175	125,001~126,000	126,000,000	215	85,001~86,000	86,000,000
136	164,001~165,000	165,000,000	176	124,001~125,000	125,000,000	216	84,001~85,000	85,000,000
137	163,001~164,000	164,000,000	177	123,001~124,000	124,000,000	217	83,001~84,000	84,000,000
138	162,001~163,000	163,000,000	178	122,001~123,000	123,000,000	218	82,001~83,000	83,000,000
139	161,001~162,000	162,000,000	179	121,001~122,000	122,000,000	219	81,001~82,000	82,000,000
140	160,001~161,000	161,000,000	180	120,001~121,000	121,000,000	220	80,001~81,000	81,000,000
141	159,001~160,000	160,000,000	181	119,001~120,000	120,000,000	221	79,001~80,000	80,000,000
142	158,001~159,000	159,000,000	182	118,001~119,000	119,000,000	222	78,001~79,000	79,000,000
143	157,001~158,000	158,000,000	183	117,001~118,000	118,000,000	223	77,001~78,000	78,000,000
144	156,001~157,000	157,000,000	184	116,001~117,000	117,000,000	224	76,001~77,000	77,000,000
145	155,001~156,000	156,000,000	185	115,001~116,000	116,000,000	225	75,001~76,000	76,000,000
146	154,001~155,000	155,000,000	186	114,001~115,000	115,000,000	226	74,001~75,000	75,000,000
147	153,001~154,000	154,000,000	187	113,001~114,000	114,000,000	227	73,001~74,000	74,000,000
148	152,001~153,000	153,000,000	188	112,001~113,000	113,000,000	228	72,001~73,000	73,000,000
149	151,001~152,000	152,000,000	189	111,001~112,000	112,000,000	229	71,001~72,000	72,000,000
150	150,001~151,000	151,000,000	190	110,001~111,000	111,000,000	230	70,001~71,000	71,000,000
151	149,001~150,000	150,000,000	191	109,001~110,000	110,000,000	231	69,001~70,000	70,000,000

재난 등급	재난지수	재난지원금	재난 등급	재난지수	재난지원금	재난 등급	재난지수	재난지원금
232	68,001~69,000	69,000,000	272	39,001~39,500	39,500,000	312	19,001~19,500	19,500,000
233	67,001~68,000	68,000,000	273	38,501~39,000	39,000,000	313	18,501~19,000	19,000,000
234	66,001~67,000	67,000,000	274	38,001~38,500	38,500,000	314	18,001~18,500	18,500,000
235	65,001~66,000	66,000,000	275	37,501~38,000	38,000,000	315	17,501~18,000	18,000,000
236	64,001~65,000	65,000,000	276	37,001~37,500	37,500,000	316	17,001~17,500	17,500,000
237	63,001~64,000	64,000,000	277	36,501~37,000	37,000,000	317	16,501~17,000	17,000,000
238	62,001~63,000	63,000,000	278	36,010~36,500	36,500,000	318	16,001~16,500	16,500,000
239	61,001~62,000	62,000,000	279	35,501~36,000	36,000,000	319	15,501~16,000	16,000,000
240	60,001~61,000	61,000,000	280	35,001~35,500	35,500,000	320	15,001~15,500	15,500,000
241	59,001~60,000	60,000,000	281	34,501~35,000	35,000,000	321	14,501~15,000	15,000,000
242	58,001~59,000	59,000,000	282	34,001~34,500	34,500,000	322	14,001~14,500	14,500,000
243	57,001~58,000	58,000,000	283	33,501~34,000	34,000,000	323	13,501~14,000	14,000,000
244	56,001~57,000	57,000,000	284	33,001~33,500	33,500,000	324	13,001~13,500	13,500,000
245	55,001~56,000	56,000,000	285	32,501~33,000	33,000,000	325	12,501~13,000	13,000,000
246	54,001~55,000	55,000,000	286	32,001~32,500	32,500,000	326	12,001~12,500	12,500,000
247	53,001~54,000	54,000,000	287	31,501~32,000	32,000,000	327	11,501~12,000	12,000,000
248	52,001~53,000	53,000,000	288	31,001~31,500	31,500,000	328	11,001~11,500	11,500,000
249	51,001~52,000	52,000,000	289	30,501~31,000	31,000,000	329	10,501~11,000	11,000,000
250	50,001~51,000	51,000,000	290	30,001~30,500	30,500,000	330	10,001~10,500	10,500,000
251	49,500~50,000	50,000,000	291	29,501~30,000	30,000,000	331	9,501~10,000	10,000,000
252	49,001~49,500	49,500,000	292	29,001~29,500	29,500,000	332	9,001~9,500	9,500,000
253	48,501~49,000	49,000,000	293	28,501~29,000	29,000,000	333	8,501~9,000	9,000,000
254	48,001~48,500	48,500,000	294	28,001~28,500	28,500,000	334	8,001~8,500	8,500,000
255	47,501~48,000	48,000,000	295	27,501~28,000	28,000,000	335	7,501~8,000	8,000,000
256	47,001~47,500	47,500,000	296	27,001~27,500	27,500,000	336	7,001~7,500	7,500,000
257	46,501~47,000	47,000,000	297	26,501~27,000	27,000,000	337	6,501~7,000	7,000,000
258	46,001~46,500	46,500,000	298	26,001~26,500	26,500,000	338	6,001~6,500	6,500,000
259	45,501~46,000	46,000,000	299	25,501~26,000	26,000,000	339	5,501~6,000	6,000,000
260	45,001~45,500	45,500,000	300	25,001~25,500	25,500,000	340	5,001~5,500	5,500,000
261	44,501~45,000	45,000,000	301	24,501~25,000	25,000,000	341	4,501~5,000	5,000,000
262	44,001~44,500	44,500,000	302	24,001~24,500	24,500,000	342	4,001~4,500	4,500,000
263	43,501~44,000	44,000,000	303	23,501~24,000	24,000,000	343	3,501~4,000	4,000,000
264	43,001~43,500	43,500,000	304	23,001~23,500	23,500,000	344	3,001~3,500	3,500,000
265	42,501~43,000	43,000,000	305	22,501~23,000	23,000,000	345	2,501~3,000	3,000,000
266	41,201~42,500	42,500,000	306	22,001~22,500	22,500,000	346	2,001~2,500	2,500,000
267	41,501~42,000	42,000,000	307	21,501~22,000	22,000,000	347	1,501~2,000	2,000,000
268	41,000~41,500	41,500,000	308	21,001~21,500	21,500,000	348	1,001~1,500	1,500,000
269	40,501~41,000	41,000,000	309	20,501~21,000	21,000,000	349	501~1,000	1,000,000
270	40,001~40,500	40,500,000	310	20,001~20,500	20,500,000	350	300이상~500	500,000
271	39,501~40,000	40,000,000	311	19,500~20,000	20,000,000			

<별첨 2>

재난복구비 지원규모별 농어가 분포 현황

(단위: 원, 호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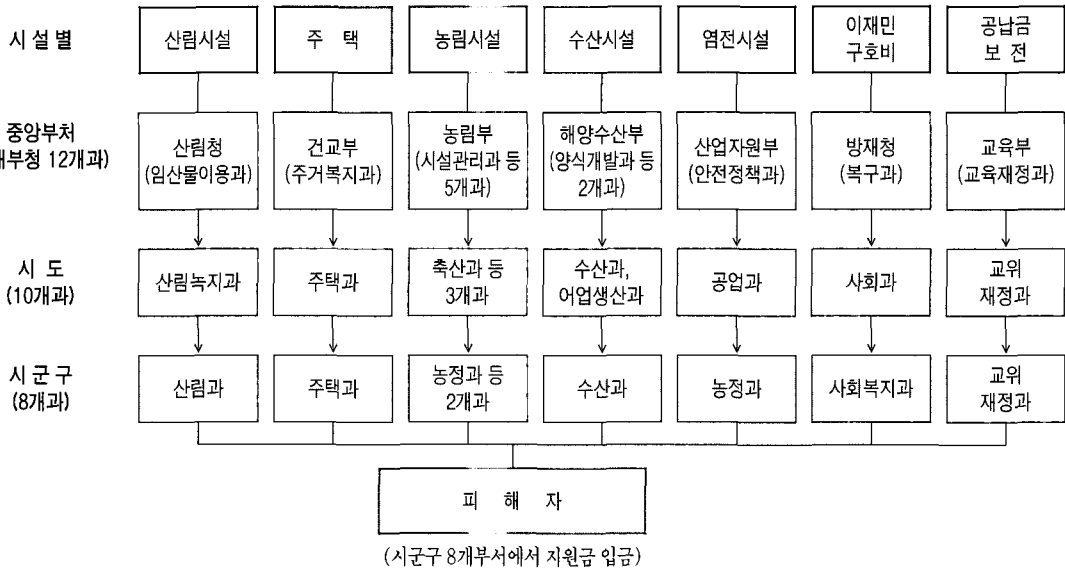
구 분		삼 척	논 산	나 주	통 영	계	
복구비 지원액	최고	112,392,000	135,745,940	676,410,000	817,841,000		
	최저	820	112,580	340	27,102		
	평균	810,106	16,773,475	1,515,152	21,635,566		

구 분	농가수 (%)		금 액 (%)		농가수 (%)		금 액 (%)		농가수 (%)		금 액 (%)	
	농가수 (%)	금 액 (%)	농가수 (%)	금 액 (%)	농가수 (%)	금 액 (%)	농가수 (%)	금 액 (%)	농가수 (%)	금 액 (%)		
지 원 규 모 별 농 어 가 분 포	0	38 (1.7)	0 (0.0)	6 (0.7)	0 (0.0)	0 (0.0)	0 (0.0)	0 (0.0)	44 (0.2)	0 (0.0)		
	1~100만원	1,302 (56.8)	246,061,240 (6.2)	17 (4.6)	10,930,810 (0.2)	7,876 (73.2)	2,356,958,478 (14.5)	208 (4.9)	105,497,942 (0.1)	9,403 (53.2)	2,719,448,470 (2.6)	
	101~200	532 (23.2)	771,587,600 (19.4)	24 (6.5)	39,601,150 (0.6)	1,506 (14.0)	2,002,873,850 (12.3)	2,520 (59.3)	4,960,828,770 (6.4)	4,582 (25.9)	7,774,891,370 (7.4)	
	201~300	164 (7.1)	412,807,380 (10.4)	21 (5.7)	55,433,730 (0.9)	282 (2.6)	673,169,650 (4.1)	78 (1.8)	180,390,240 (0.2)	545 (3.1)	1,321,801,000 (1.3)	
	301~400	43 (1.9)	157,538,080 (4.0)	27 (7.4)	96,606,260 (1.6)	103 (1.0)	353,168,516 (2.2)	75 (1.8)	265,242,040 (0.3)	248 (1.4)	872,554,896 (0.8)	
	401~500	58 (2.5)	244,675,070 (6.2)	19 (5.2)	86,936,600 (1.4)	125 (1.2)	576,807,271 (3.5)	54 (1.3)	240,015,730 (0.3)	256 (1.4)	1,148,434,671 (1.1)	
	501~600	11 (0.5)	59,814,800 (1.5)	21 (5.7)	114,658,760 (1.9)	106 (1.0)	579,847,702 (3.6)	72 (1.7)	398,343,200 (0.5)	210 (1.2)	1,152,664,462 (1.1)	
	601~700	3 (0.1)	20,052,420 (0.5)	20 (5.4)	130,919,270 (2.1)	144 (1.3)	946,127,104 (5.8)	18 (0.4)	115,045,380 (0.1)	185 (1.0)	1,212,144,174 (1.2)	
	701~800	4 (0.2)	30,119,660 (0.8)	22 (6.0)	164,612,160 (2.7)	101 (0.9)	756,750,327 (4.6)	87 (2.0)	632,569,800 (0.8)	214 (1.2)	1,584,051,947 (1.5)	
	801~900	0 (0.0)	0 (0.0)	15 (4.1)	128,072,110 (2.1)	121 (1.1)	1,038,765,088 (6.4)	42 (1.0)	352,528,310 (0.5)	178 (1.0)	1,519,365,508 (1.5)	
	901~1,000	58 (2.5)	559,090,970 (14.1)	20 (5.4)	194,071,660 (3.2)	75 (0.7)	707,497,970 (4.3)	41 (1.0)	391,144,540 (0.5)	194 (1.1)	1,851,805,140 (1.8)	
	1,001~1,500	26 (1.1)	307,408,530 (7.7)	51 (13.9)	651,912,070 (10.6)	251 (2.3)	3,026,831,562 (18.6)	289 (6.8)	3,842,183,350 (4.9)	617 (3.5)	7,828,335,512 (7.5)	
	1,501~2,000	46 (2.0)	881,210,980 (22.2)	24 (6.5)	427,612,190 (6.9)	40 (0.4)	671,263,574 (4.1)	78 (1.8)	1,358,243,750 (1.7)	188 (1.1)	3,338,330,494 (3.2)	
	2,001~2,500	8 (0.3)	175,461,800 (4.4)	12 (3.3)	263,806,260 (4.3)	9 (0.1)	194,031,470 (1.2)	75 (1.8)	1,705,239,950 (2.2)	104 (0.6)	2,338,539,480 (2.2)	
	2,501~3,000			14 (3.8)	381,085,260 (6.2)	4 (0.0)	109,092,680 (0.7)	57 (1.3)	1,581,468,500 (2.0)	75 (0.4)	2,071,646,440 (2.0)	
	3,001~3,500			4 (1.1)	122,426,140 (2.0)	3 (0.0)	96,936,070 (0.6)	52 (1.2)	1,669,131,200 (2.1)	59 (0.3)	1,888,493,410 (1.8)	
	3,501~4,000			5 (1.4)	188,712,910 (3.1)	5 (0.0)	188,561,456 (1.2)	37 (0.9)	1,376,151,100 (1.8)	47 (0.3)	1,753,425,466 (1.7)	
	4,001~4,500			6 (1.6)	259,641,980 (4.2)	2 (0.0)	81,278,768 (0.5)	36 (0.8)	1,533,097,190 (2.0)	44 (0.2)	1,874,017,938 (1.8)	
	4,501~5,000			7 (1.9)	328,261,740 (5.3)	1 (0.0)	46,803,910 (0.3)	32 (0.8)	1,523,778,000 (2.0)	40 (0.2)	1,898,843,650 (1.8)	
	5,001~6,000			9 (2.5)	497,805,490 (8.1)	2 (0.0)	115,473,980 (0.7)	61 (1.4)	3,359,227,300 (4.3)	72 (0.4)	3,972,506,770 (3.8)	
6,001~7,000			6 (1.6)	377,600,780 (6.1)			45 (1.1)	2,934,326,000 (3.8)	51 (0.3)	3,311,926,780 (3.2)		
7,001~8,000			3 (0.8)	224,514,680 (3.6)			46 (1.1)	3,466,085,000 (4.4)	49 (0.3)	3,690,599,680 (3.5)		
8,001~9,000			5 (1.4)	420,086,010 (6.8)			26 (0.6)	2,192,334,000 (2.8)	31 (0.2)	2,612,420,010 (2.5)		
9,001~10,000			3 (0.8)	284,437,020 (4.6)			27 (0.6)	2,530,886,000 (3.2)	30 (0.2)	2,815,323,020 (2.7)		
10,001 이상	1 (0.0)	112,392,000 (2.8)	6 (1.6)	706,120,220 (11.5)	4 (0.0)	1,780,800,000 (10.9)	192 (4.5)	41,226,352,000 (52.9)	203 (1.1)	43,825,664,220 (42.0)		
합계	2,294	3,978,220,530	367	6,155,865,260	10,760	16,303,039,426	4,248	77,940,109,292	17,669	104,377,234,508		

<별첨 3>

사유재산피해 지원체제 일원화 흐름도

※ 현행



※ 혁신

